

2021 제2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영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프랑스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외국법제동향

- 일본 바이오뱅크 및 인체 시료·정보 관련 법제 동향
-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 미국 「무역확장법」과 수입규제 법제 동향
- 미국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과 국방획득전문가 양성제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1 제2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김잔디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교수,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검색서비스의 보급은 소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종래 거래상대가 되지 않았던 해외 기업이나 소비자와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반면 일부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둘러싸고 우월적 지위 남용, 개인 데이터의 부당한 취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의무 부과, 경쟁법 개정 및 M&A 심사 지침 개정 등의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일본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회사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독점금지법」을 토대로 대응해 왔으나, 이는 사후 규제의 측면이 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이하 ‘디지털플랫폼법’으로 표기)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의 제정 배경, 의의, 내용 등에 대해 발 빠르게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남상준·조은진,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및 전망 - 공정경쟁과 미디어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5쪽 이하.

## II. 「디지털플랫폼법」 제정 배경 및 경위<sup>2</sup>

### 1. 배경

근래 일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함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시장 접근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성 등으로부터 독점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거래를 위하여 일부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거래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sup>3</sup>

### 2. 제정 경위

2010년 후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에 의한 독점을 문제시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였고,<sup>4</sup>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총무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 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회(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巡る取引環境整備に関する検討会)’(이하 “검토회”로 표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디지털시장의 거래환경 조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사 및 검토를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총무성에서 ‘플랫폼형 비즈니스의 대두에 대응한 룰 정비의 기본원칙(プラットフォーム型ビジネスの台頭に対応したルール整備の基本原則)’(이하 “기본원칙”으로 표기)<sup>5</sup>을 책정하였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 거래 환경 정비를 위한 제도나 집행 방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관련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을 위하여 ①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거래 실태의 파악, ② 디지털 기술이나 비즈니스를 포함한 다양하고, 고도의 지식을 지닌 전문 조직 등의 창설, ③ 거래 조건의 개시(開示) 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방안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열린 일본 경제재생본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는 거래 관행의 투명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법제 또는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도모할 것, 디지털시장의 경제 정책의 조정 등에 대한 높

2 이하 北島洋平など「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概要」NBL No.1186(2020) 참조하여 작성.

3 예를 들어 經濟産業省「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報告書」(2018) 등.

4 日置純子「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めぐる取引環境の整備に向けて」NBL No.1186(2021) 26쪽.

5 <https://www.meti.go.jp/press/2018/12/20181218003/20181218003-1.pdf> 참조,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5일)

은 전문적 지견, 신속 대응 가능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것 등이 확인되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몰 및 앱스토어의 거래에서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거래 관행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모어의 거래 관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令和2年 法律 第38号))’(이하 “실태조사”로 표기)를 실시하였다.

2019년 9월 내각에는 디지털시장의 평가나 경쟁 정책의 기획·입안 등을 행하는 디지털시장 경쟁본부와 조사 및 심의 등을 실시하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쟁회의 및 워킹그룹에서 기본원칙, 옵션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디지털 플랫폼모어 거래투명화법(가칭)의 방향성’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월의 경쟁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법」의 개요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법안의 입안 작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2월 18일 각의 결정되어 제201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중의원 및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27일에 가결·성립되어 같은 해 6월 3일에 공포되었다.

### Ⅲ. 「디지털플랫폼법」의 목적 등

#### 1. 목적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진전에 의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어 세계적 규모의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발생시키며 디지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대성이 확대되고 있다. 상당한 변화를 거치고 있는 디지털시장에서의 혁명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표기)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이 다수 이용자가 모이는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디지털 플랫폼을 상품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이하 “상품 제공 이용자”로 표기)에게는 그 이용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유로 인하여 해당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한 자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① 사전 설명 없이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② 거래 거절의 이유가 표기되지 않음, ③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체제·절차가 불충분한 것과 같이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상품 제공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되었다.

동법은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하여 정보 개시, 자주적인 대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그 투명성·공정성을 향상하고, 최종적으로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기본이념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의 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활력의 향상 및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혁신과 균형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충분한 창의 발휘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상품 제공 이용자의 상호이해의 촉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법」 제3조에 서는 이러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그 배경이 된 사고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3. 본법의 개요

표1 「디지털플랫폼법」의 구조

<p><b>제1장 총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 목적</li> <li>제2조 정의</li> <li>제3조 기본이념</li> </ul> <p><b>제2장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지정</li> <li>제5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조건 등의 개시</li> <li>제6조 개시에 관한 권고, 명령 등</li> <li>제7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li> <li>제8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 등</li> <li>제9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평가 등</li> <li>제10조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고 등</li> <li>제11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지정의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 보고 및 검사</li> <li>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 청구</li> <li>제14조 적용제외</li> <li>제15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li> <li>제16조 정령의 입안 등</li> </ul> <p><b>제3장 잡칙(雜則)</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7조 다른 정령과의 관계</li> <li>제18조 경과조치</li> <li>제19조 송달해야할 서류</li> <li>제20조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적용</li> <li>제21조 공시송달</li> <li>제2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li> </ul> <p><b>제4장 벌칙</b></p>
---	---

「디지털플랫폼법」은 총칙,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조치, 잡칙, 벌칙의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법은 디지털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 그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의 필요성이 높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제공조건 등의 개시: 거래의 투명성이라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공조건 등의 개시를 의무화 함
- ②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품 제공 이용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상호이해의 촉진을 위한 필요 조치 강구를 의무화 함
- ③ 모니터링 리뷰: 자주적인 개선 촉진의 관점에서 매년 대처 현황과 이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재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보고서 제출을 받은 경제산업대신은 당해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공표함

## IV. 내용

### 1. 규제의 대상

디지털 플랫폼이라 불리는 서비스에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거래의 실정이나 동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대상으로 하면 과잉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 반면 변화가 심한 디지털시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상의 문제가 심각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법에서는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널리 정의하고, 정령에서 구체적 규율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

#### (1) 디지털 플랫폼의 정의

본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①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시키는 장일 것(다면시장), ②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에 의해 구축되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될 것(온라인성), ③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효용을 높이는 관계를 이용하고 있을 것(네트워크 효과)의 요소에 의해 정의하고 있다.<sup>6</sup> 그중 ③은 이용자의 증가가 다른 이용자의 증가를 초래하여 디지털 플랫폼 전체의 규모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몰이나 앱스토어와 같이 상품자와 구입자 등 다른 이용자 그룹 사이에 상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것과 디지털광고의 발신에 따른 SNS와 같이 일방의 이용자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이에 따른 다른 이용자 그룹(광고주)의 효용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6 동법 제2조제1항.

## (2)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정의

본법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가운데 특히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높은 것을 정령에서 당해 사업의 구분 및 규모를 정하여 특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공자를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법률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하였다.<sup>7</sup>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지정된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라고 하며, 당해 지정의 원인이 된 디지털 플랫폼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한다. 또한 본법에서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소재에 따라 적용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일본시장을 공략한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자라면 외국의 사업자라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령에서 정할 때에는 국민생활의 이용 현황이나 일부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 집중 정도를 토대로 거래실적 및 동향, 본법에 의해 상품 제공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이념에 따라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지정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sup>8</sup>

## 2. 제공조건 등의 개시

### (1) 취지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몰 및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출품하는 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 ① 심사기준이 불명확함
- ② 규약의 일방적인 변경에 의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함
- ③ 악질적인 반품이라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
- ④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스스로 시장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거래 데이터나 유저 정보를 얻어 스스로 상품판매나 판촉활동에 이용함
- ⑤ 검색표시, 결제방법, 수수료 등에서 자사 또는 관련회사를 우대하고 있음
- ⑥ 출품가격을 다른 디지털 플랫폼과 동등 또는 그것보다 우위하도록 요청받음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에 의해 개개의 위법사안을 시정하게 된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제시를 도모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이용자의 자주적·합리적 선택을 위해 불가결하며,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본법에서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엄수해야할 개시의무에 관하여 ① 제공조

7 동법 제4조제1항.

8 동법 제4조제3항.

건의 적절한 개시방법, ② 특정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개시해야 할 사항, ③ 이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행할 때 개시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9</sup>

## (2) 개시의무의 내용

### 1) 제공조건의 개시방법

이용자가 디지털 플랫폼에 관하여 자주적·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조건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법에서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조건을 개시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10</sup>

### 2) 상품 제공 이용자에 대한 제공조건으로서의 개시사항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 시에 상품 제공 이용자에게 이하의 사항을 개시해야 한다.

- ①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그 판단기준<sup>11</sup>
- ② 상품 제공 이용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상품의 구입이나 유상임무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③ 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순위를 붙여 표시할 경우 당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주요 사항<sup>12</sup>
- ④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상품 등 제공데이터<sup>13</sup>를 취득·사용하는 경우 당해 데이터의 내용 및 취득·사용의 조건
- ⑤ 상품 제공 이용자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상품 등 제공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가부 및 가능한 경우 당해 데이터의 내용, 취득, 제공의 방법 및 조건
- ⑥ 고충의 신고 및 협의 신청 방법
- ⑦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사항

9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10 동법 제5조제1항.

11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 전부를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사유나 그 제공의 일부를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사유가 포함된다.

12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표시되는 랭킹이나 검색 결과 등에 관하여 이를 표시하는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시하는 것이다.

13 상품 제공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등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함.

### 3) 일반이용자에 대한 제공조건으로 개시해야 할 사항

본법은 상품 제공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이용자 외의 이용자(이하 “일반이용자”로 표기)와의 거래관계에서도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이용자의 자주적·합리적인 선택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품 제공 이용자와의 거래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항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의 제공조건으로 개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sup>14</sup>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 ① 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순위를 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당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주요 사항
- ②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일반이용자에 의한 상품의 검색·열람·구입에 관한 데이터를 취득·사용하는 경우 당해 데이터의 내용, 취득, 사용의 조건
- ③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사항

### 4)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 개시사항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특정 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그 내용, 이유 등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15</sup> 유형적으로 볼 때 이용자의 이익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주적·합리적인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 ① 상품 제공 이용자에게 제공조건에 의하지 않는 거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② 상품 제공 이용자에게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의 일부를 거절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③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사항

### 5)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 개시사항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특정 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 예고 기간을 주고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16</sup>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 ① 상품 제공 이용자에 대한 제공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②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의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14 동법 제5조제2항제2호.

15 동법 제5조제3항.

16 동법 제5조제4항.

### 3.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실시

#### (1) 취지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게 출품 정지처분이나 규약의 해석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 결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응하는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하는 등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상품 제공 이용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에서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법에서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상품 제공 이용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에서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2) 조치의 내용

상호이해의 촉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자주적·자율적인 대책을 존중하고, 창의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당해 조치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이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sup>18</sup>

- ① 상호이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② 상품 제공 이용자에 대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절차 정비에 관한 사항
- ③ 상품 제공 이용자로부터의 고충의 처리·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체제·절차에 관한 사항
- ④ 관계자와 긴밀한 연락을 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 관리를 행하는 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상품 제공 이용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 모니터링 리뷰

#### (1) 취지

본법은 디지털시장에서의 혁신을 배려하며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자율적인 대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①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경제산

17 동법 제7조제1항.

18 동법 제7조제2항, 제3항.

업대신에게 자주적·자율적 대책의 현황을 보고하고, ② 경제산업대신이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sup>19</sup> ③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당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함으로써 거래환경의 개선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른바 ‘공동규제’의 사고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sup>20</sup>

## (2) 보고서의 제출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매년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21</sup>

- ①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의 개요에 관한 사항
- ② 고충의 처리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를 토대로 한 정보개시의 현황에 관한 사항
- ④ 제7조를 토대로 한 체제·절차의 정비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②~④에 관한 자기평가

## (3)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평가

경제산업대신은 보고서의 제출을 받을 때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때 다각적인 시점에서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자주적 대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 학식 경험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경제산업대신은 평가 결과를 제출된 보고서의 개요와 함께 공표한다.<sup>22</sup>

## (4)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자주적 대책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투명성 및 공정성의 자주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3</sup>

19 池田大起「デジタル市場競争本部における検討状況と課題」,NBL No.1186(2020) 44쪽 이하.

20 규제의 큰 틀을 법률 등에 정함과 동시에 상세한 내용을 사업자의 자주적 대책에 맡기는 것으로 정부규제의 안정성과 자주규제의 유연성의 이점을 합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21 동법 제9조제1항.

22 동법 제9조2항, 4항, 5항.

23 동법 제9조제6항.

## 5.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요청

본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독점금지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독점금지법」에 위반한 개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법을 토대로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본법에서는 경제산업대신이 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 그 사실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상품 제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경제산업대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4</sup>

## 6. 기타

### (1) 이용자로부터의 신청

이용자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청 및 요청한 것을 이유로 당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sup>25</sup>

### (2) 행정조치·벌칙

경제산업대신은 개시의무 위반이나, 상호이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불이행에 관하여 권고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공표한다.<sup>26</sup> 또한 명령위반이나 보고서의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sup>27</sup>

### (3) 송달

지정이나 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송달 방법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며,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과 동시에 소재 불명자나 국외사업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규정을 정한다.<sup>28</sup>

24 동법 제13조.

25 동법 제10조.

26 동법 제6조, 제8조.

27 동법 제23조, 제24조.

28 동법 제19조, 제22조.

## V.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변화가 심한 디지털시장 관련 규정의 정비에 있어서는 혁신 촉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양립을 지향하고, 국가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자주적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하에 일본은 「디지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대책을 규정하였다. 이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동시에 모니터링 리뷰 등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이른바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둘러싼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독점금지법」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문제해결은 사후 규제의 측면이 강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동법의 제정으로 사전적 문제발생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어 참고할만하다. 하지만 동법은 어디까지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상품 제공 이용자의 상호이해 촉진·거래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 강요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상품 제공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통해 당해 행위를 배제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이 제정·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독점금지법」의 엄정하고 정확한 집행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디지털 플랫폼 관련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겠다.

동법은 국내사업자·외국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내대리인 등의 대응체제 및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정한 집행을 담보하여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혁신적 대처를 저해하지 않도록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나 정기적 모니터링 리뷰의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자주적인 문제 개선을 촉진하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규제는 다른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방식이며, 동 규제방식이 대규모 외국사업자에게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 현황을 주시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sup>29</sup>

다음으로 동법의 주무대신은 경제산업대신이며 필요에 따라 총무대신과의 협의,<sup>30</sup>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면적 시장에서 복수의 네트워크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를 위해서는 감독하는 쪽의 운영 태세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법률과 조직의 종적 모니터링을 통한 법집행이 아닌 관계 성형 등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법령 전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이

29 薄井蘭実「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ルールの整備—競争政策の観点から」立法と調査 No.422, (2020)17쪽.

30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거래 등이 고도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 관한 법령·지침의 제정, 변경, 권고, 명령 등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을 소관하는 총무대신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용 사업 전개 가능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성칭 횡단적 대응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성칭이 일체가 되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에서 규정된 모니터링 리뷰를 위하여 담당 성칭의 전문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견식 있는 외부 인재의 등용이나 전문가의 의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평가에 있어서도 과도한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거래환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sup>31</sup>

## VI. 나가며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목적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이용사업자와의 거래환경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양자가 공존·공생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sup>32</sup>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은 본래 사업자가 스스로 담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외국의 동향을 토대로 일본의 법제도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비즈니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한 상품 제공 이용자의 보호와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법은 플랫폼 사업자 일반이 아닌 아마존, 구글, 야후 등과 같은 거대한 특정 플랫폼 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상품 등 구입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당해 데이터의 내용, 취득, 조건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해당 데이터 취득 및 사용 자체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sup>33</sup> 이처럼 동법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후적인 조치만 가능한 「독점금지법」 대응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동법의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31 薄井藹実, 앞의 논문, 17쪽.

32 薄井藹実, 앞의 논문, 16쪽 이하.

33 미야시타 슈이치(윤태영 역),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취급과 소비자 보호 - 일본의 상황에 입각하여-”, 민사법학 제92호, 한국민사법학회, 2020, 400쪽 이하.

## 참고문헌

- 남상준·조은진,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및 전망 -공정경쟁과 미디어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 미야시타 슈이치(윤태영 역),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취급과 소비자 보호 - 일본의 상황에 입각하여 -”, 민사법학 제92호, 한국민사법학회, 2020.
- 北島洋平など「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概要」NBL No.1174(2020)
- 日置純子「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めぐる取引環境の整備に向けて」NBL No.1186(2021)
- 池田大起「デジタル市場競争本部における検討状況と課題」NBL No.1186(2020).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ress/2018/12/20181218003/20181218003-1.pdf>

# KLRI

##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http://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http://www.klri.re.kr)

###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http://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